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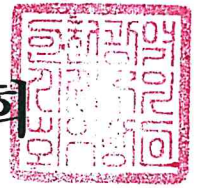
- 서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의 청가서를 의장이 허가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 임신 중인 여성위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 (다태아 임신 경우 120일) 허가하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 남성위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휴가 10일을 허가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 겸직 금지 위반에 따른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안 제8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고 선 회



2023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4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의원의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